

중재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지 성 배

I. 머리말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빈번한 통상 분쟁이 예상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각국 기업들 역시 다양한 분쟁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하에서 다국적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립적인 포럼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분쟁해결수단인 국제중재는 더욱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세계은행이 매년 190여개국의 투자환경을 조사하여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도 국제중재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을 정도이다.

국제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는 기

업 간 개별 계약위반사항을 다루는 국제상사분쟁과 BIT, FTA 등의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협정의 위반을 다루는 국제투자분쟁이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는 IMF 구제금융 당시 대한생명 등 우리 금융기관을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중재사건들을 통해 국제중재를 국제계약의 기본적인 분쟁해결절차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론스타, 하노칼 등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등이 잘 알려진 바 있고, 최근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의 개입,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하여 해외 주주로부터의 투자중재제기가능성이 이슈화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계 각국이 국제중재를 단순한 분쟁해

결수단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고 중재제도 이용을 활성화할 경우 법률서비스업은 물론 관광·숙박·교통 등 연관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중재심리시설 확충 및 각종 정보 교류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중재 자체에 산업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중재의 산업적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한 홍콩, 싱가포르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미 세계적인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하였으며,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중국, 일본 또한 최근에는 국제중재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며 중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도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속에 국제중재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 흐름을 고려하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중재를 보다 활성화하고 중재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산업적 측면에서의 중재

대한상사중재원(KCAB)¹⁾,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²⁾, 런던국제중재법원(LCIA)³⁾,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⁵⁾,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⁶⁾,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⁷⁾ 등 세계 주요 7개 중재기관의 국제중재 사건 수 합계를 보면 2010년 2,712건에서 2016년 3,345건으로 23.3% 늘어나는 등 그 증가세가 뚜렷하다.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싱가포르 법무장관이 발표한 자료⁸⁾에 따르면, 국제중재 사건 수의 증가에 따라 법률서비스 수요가 세계적으로 매년 약 3.3% 증가할 것으로 예

1)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2)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3)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4)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5)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6)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7)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8) Ms. Indranee Rajah, Opening Keynote Address at the 3rd ICC Asia Conference, Singapore, 28 June 2017

상되며,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의 법률서비스 수요는 약 5.5% 상당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실공히 국제중재는 세계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사건유치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중재 사건 유치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에 기인한다. 일례로 론스타 사건의 경우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 등에서 총 4차례의 심리를 가졌고, 심리당 평균 일주일 이상을 소요하였음을 고려하면 중재인, 당사자, 중재대리인 등 수십 명이 이동 및 체류로 소비한 부대비용이 상당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중재 분야는 타 법률서비스 분야에 비해 국제컨퍼런스, 모의국제중재대회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개최지가 누리는 경제파급효과가 크다. 홍콩을 예로 들면, 매년 10월 Arbitration Week 기간 동안 세계 각지 수백명의 중재관계자들이 홍콩에 머무르게 되며, 매년 3월 말 VIS moot⁹⁾ 홍콩대회 참가를 위해 전 세계 로스쿨로부터의 천여명의 학생과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홍콩을 방문하고 있으니 그 경제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III. 우리 중재산업 현황 및 육성전략

1. 우리 중재산업 현황

세계적인 중재사건 증가 추세와는 달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접수실적은 연간 70여건선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 중재기관 통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국제중재 이용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IAC의 최근 3년 한국기업 당사자 사건은 16건→34건→38건으로 매년 오름세에 있고, HKIAC에서 한국기업의 중재사건 접수 순위는 '15년 10위에서 '16년 6위로 상승하였으며, ICC에서도 '16년 82개의 한국기업이 당사자로 참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자국 기업 관련 분쟁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이들 분쟁 대부분이 해외중재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심지어 UAE 원전사업 관련 한국전력-현대건설-삼성건설 등 우리 기업들 간 분쟁 역시 해외 중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사사건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해사중재사건이 영국

9) 각국의 법학도들이 매년 비엔나 및 홍콩에 모여 중재에 관련한 변론 기량을 겨루는 세계 최대의 모의재판(moot) 대회. 국제 상사중재 모의재판 대회가 정식 명칭이지만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국제중재인의 이름을 따 '비스 무트'라고도 부름.

등 해외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기업 사건부터라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중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기업들이 국제중재를 해외중재기관에 회부하는 주요 이유부터 살펴보겠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계약체결 당시 분쟁관할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계약서에 있는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위해 준거법 및 분쟁관할을 양보하거나 계약체결 전 분쟁 발생가능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하곤 하는데, 설사 계약체결 시 협상력 우위의 입장에 있더라도 준거법 및 분쟁관할을 상대측에 유리하게 정하게 되면 추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리한 분쟁관할로 인해 상대방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분쟁관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둘째, 우리나라 중재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가 대체로 낮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기관이 보유한 중재인리스트는 중재발전의 척도를 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의장중재인에 대한 당사자들 간 합의는 매우 어려우며, 중재기관 등이 중재지에 근거를 둔 중재인을 의장중재

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훌륭한 중재인이 다수 소재하는 지역인지 여부는 기업들이 중재지를 선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중재가 가능한 고도인력은 개별적 훈련을 거친 소수의 변호사 집단에 국한되어 있고, 이는 우수한 중재인력 양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의 중재전문인력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셋째, 국제중재를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도 한국에서의 중재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에 심리공간이 있지만 다수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공간부족으로 심리 진행이 어렵고, 2개 이상의 중재사건을 동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 하에 우리의 4~8배에 이르는 규모로 최첨단의 심리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2. 중재산업 육성전략

최근 몇 년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제중재의 전반적인 수준은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중재선진국의 발전정도에 비하면 다소

뒤쳐져 있다. 올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필두로 국가차원에서 중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노력들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중재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016년 개정 중재법은 중재합의의 서면성 완화, 임시적 처분 제도의 정비,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강화 등 그동안 중재제도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중재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중재규칙 역시 개정 중재법을 반영하면서 긴급중재인 제도 등 최근 변화된 국제중재 실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적인 개정 내용에 대한 대외적 홍보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2016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의 지원 하에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등 해외 현지에서 우리의 우수한 중재법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기존에 외국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 중재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선진적인 중재인 위촉·선정시스

템을 갖추어야 한다. 훌륭한 인격과 건전한 판단력,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춘 중재인의 위촉·선정이 성공적인 중재의 필수적 요소임은 자명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부터 명망 있는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중재인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중재인을 위촉하고 있다. 또한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중재인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중재인 윤리강령’은 중재인 스스로 당사자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공정한 절차진행을 위한 지침서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체계적인 중재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도 중재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로스쿨 내 중재전문 LL.M.과정 등의 적극적 개설을 통한 신규 인력 양성, 전문교육기관에서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비법조인력 및 기존 인력의 중재 전문성 제고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종 교육·연수프로그램, 인증회원제 운영 등을 통해 중재 관련 커뮤니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중재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싱가포르, 홍콩의 예¹⁰⁾에서 알 수 있듯 중재산업 진흥의 출발점은 충분한 규모와 편리한 설비를 갖춘 중재시설의 확보이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중재시설의 건립에 따른 중재활성화 효과로 국제중재사건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유치할 경우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며,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약 6,2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소요되어 왔던 국제중재 관련 제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미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재활성화 사업을 향후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차별적 경쟁력을 지닌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그 동안 한국이 중재지로 선택받지 못했던 이유로는 낙후된 심리시설, 영어실력과 국제중재경험을 겸비한 실무가의 부족, 중재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협상 패착 등이 있으나, 최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초반의 부진을 씻고 지금의 명성을 얻은 싱가포르의 예¹¹⁾처럼 우리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중재산업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핵심수행기관으로서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우리 기업들의 국제중재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반 사항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며 중재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0) 영국 Queen Mary 대학이 발표한 「2015 국제중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장 성장한 중재지는 어느 곳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2위를 차지하였으며, “심리시설의 향상(better hearing facilities)”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11) 싱가포르는 2009년 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Maxwell Chambers)를 설립한 이후, 국제중재사건을 2배 이상(2008년 99건 → 2015년 271건) 유치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377억원 상당으로 추산됨.